제918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(신설) ○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규정 마련 – ① 전문인력 양성에 적절한 교육과정 및 내용, ② 교육시설 및 장비, ③ 전문 교수요원, ④ 타당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갖춰 해수부장관에게 지정 신청 ○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·운영 관련 제재처분 신설 –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지정취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경고, 2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 ③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, 2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 ▶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궤도 · 삭도에 설치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(신설) ㅇ (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) 궤도차량(교통수단)과 정거장(여객시설)을 대상시설에 포함(개방식 삭도는 제외하고, 폐쇄식 삭도만 포함) ㅇ (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종류) 궤도 차량 및 정거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신설 ▶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1, 별표2	1.비중요
3	식품 · 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(신설)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는 기관 및 단체의 지정 요건,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신설 ▶식품 · 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9조 2.행정처분기준 신설 –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,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 기준(신설)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,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, 위법 ·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조치 기준 신설 ▶식품 · 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	1.비중요 2.비중요